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을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집단갈등조정국 및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중 3명(4급 3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3명(4급 또는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은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충처리국과 집단갈등조정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9. ~ 1.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고충처리국”을 “고충처리국·집단갈등조정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의2 중 “조사·처리 및 조정”을 “조사 및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제10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집단갈등조정국) ① 집단갈등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집단갈등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수인 관련 갈등 처리 상황의 점검 및 통계 등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2.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중재·조정 사례의 관리·분석 및 자료의 발간
5.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조정부서 지원 및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6.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7.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중재·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8. 건설·교통·도시·수자원·산업·해양 등 경제 분야의 권익구제를 위한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9. 환경·국방·문화체육관광·교육·보건복지 등 사회 분야의 권익구제를 위한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0.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이하 이 항에서 “특이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1. 특이민원의 조사·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제15조제2항 후단 중 “45명”을 “48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495”를 “505”로 하고, 일반직 계 “487”을 “49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9”를 “10”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462”를 “471”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7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심사보호국 1개 과	6명
2. 집단갈등조정국장	1명
3. 집단갈등조정국 4개 과	18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 영지원과 · 부패방지국 · 심사보 호국 · <u>고충처리국</u> · 행정심판국 · 권익개선정책국을 둔다.	제5조(하부조직) ① ----- ----- ----- <u>고충처리국</u> · 집단갈등조 <u>정국</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고충처리국) ① · ② (생 략)	제10조(고충처리국)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고충처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u>조사 · 처리 및 조정</u>	5의2. ----- ----- <u>조사 및 처리</u>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7의2. 고충민원(<u>제7호의3 및 제 7호의4</u> 에 따른 특이민원은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처리체계 구축 및 운영	7의2. ----- <u>제10조의2제3항</u> <u>제10호 및 제11호</u> ----- ----- -----
7의3. <u>폭언 · 폭행, 목적이 정당 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 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이하 이 항에 서 “특이민원”이라 한다)에 대 한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u>	<u><삭 제></u>

7의4. 특이민원의 조사·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8. ~ 19. (생략)

<신설>

<삭제>

8. ~ 19.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집단갈등조정국) ① 집
단갈등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둔
다.

②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한다.

③ 집단갈등조정국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다수인 관련 갈등 처리 상황
의 점검 및 통계 등 각종 자료
의 수집·분석 및 활용

2.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처리
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3.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처리
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및
조사상황의 총괄

4.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처리
와 관련한 위원회 중재·조정
사례의 관리·분석 및 자료의
발간

5.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
한 조정부서 지원 및 위원장

이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기획조사

6.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의 갈등을 유발하는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중재·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8. 건설·교통·도시·수자원·산업·해양 등 경제 분야의 권익구제를 위한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9. 환경·국방·문화체육관광·교육·보건복지 등 사회 분야의 권익구제를 위한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10.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45명</u>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④ 삭제 ⑤ (생략)	<u>해하는 민원(이하 이 항에서 “특이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처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u> <u>11. 특이민원의 조사·확인 및 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u>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48명</u>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95</u>	<u>505</u>	+10
•	•	•	
•	•	•	
일반직 계	<u>487</u>	<u>497</u>	+10
고위공무원단	<u>9</u>	<u>10</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62</u>	<u>471</u>	+9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93